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와 명태균 · 전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대상, 파견검사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등〉

-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99호)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80호)
-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83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병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	5
2. 파견검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서영교의원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김용민의원안 제6조제5항)	8
3.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김용민의원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13
4.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 신설 (김용민의원안 제9조의2 신설)	16
5.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 (김용민의원안 제9조의3 신설, 이성윤의원안 제24조 신설)	18

※ 참고자료	21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21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22

I . 제안경위

1. 이성윤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서영교의원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3. 김용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성윤의원안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 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 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2. 서영교의원안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3. 김용민의원안

현행법은 김건희와 그 측근들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명태균·건진 법사 연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함.

그러나 최근 김건희와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제기됨. 현행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체 규명 한계 있음. 특검이 수사기간 중 인지사건에 착수한 경우, 해당 수사 및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 있음. 또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문제 있음.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으나 최근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며,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함. 또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사건에 대해 개정 이전의 인지·수사 행위도 적법한 정식 수사로 인정하고,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실질적·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Ⅲ. 검토의견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 제14호 신설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 13. (생략) <u><신설></u>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생략)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u> <u>15. ----- 제14호-----</u> ----- ----- ----- ----- ----- <u>16. ----- 제14호-----</u> ----- ----- ----- <u>17. ----- 제16호-----</u> ----- -----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과(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제14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제15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제16호) 및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김용민의원안 제2조제1항제17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김건희와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상 수사대상에 해당 의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검이 수사기간 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수사 및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¹⁾

1) 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2. 파견검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서영교의원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김용민의원안 제6조제5항)

현행	서영교의원안	김용민의원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u>40명</u> ,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u>80명</u> 이내로 한다.	⑤ ----- ----- ----- ----- ----- ----- ----- ----- ----- -----70 <u>명</u> ----- -----140명 -----.	⑤ ----- ----- ----- ----- ----- ----- ----- ----- ----- -----60 <u>명</u> ----- -----120명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생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②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서영교의원안	김용민의원안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120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두 건의 개정안은 현행 ‘4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검사의 수를 각각 ‘60명 이내’(김용민의원안 제6조제5항)와 ‘70명 이내’(서영교의원안 제6조제5항)로 확대하고, 현행 ‘8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공무원의 수(파견검사 제외)를 각각 ‘120명 이내’(김용민의원안 제6조제5항)와 ‘140명 이내’(서영교의원안 제6조제5항)로 확대하며,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적인 수사기간을 ‘120일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서영교의원안 제9조제2항).

○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법 제7조제3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최대 4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8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조제5항),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9조제2항),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법 제9조제3항), 그럼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정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법 제9조제4항).

- 그런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군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3개²⁾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연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205명 이내)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사대상이 8개³⁾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 규모인 267명 이내(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60명 이내,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100명 이내)보다 적고, 최장 수사기간(150일 이내⁴⁾)은 같음.
- 현행법에 따라 동 특검이 2025년 7월 2일 수사를 시작해 최장 150일⁵⁾동안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서영교의원안대로 원칙적인 수사

2) 현행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는 구체적인 의혹사건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상기한 13건의 사건에 관련된 의혹사건 또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음.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구체적인 혐의 사건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상기한 8건의 사건에 관련된 혐의사건 등의 사건이 규정되어 있음.

4)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준비기간 제외 기준)

5)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준비기간 제외 기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30일)될 경우 최장 180일동안(준비기간 제외 기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를 확대하고, 원칙적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거나 수사 연장기간을 30일 늘리는 등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현행법의 제정 목적, 개정안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2025년 6월 시행된 3개 특검의 규모 및 수사기간>

구 분		내란 특검법	현행법	순직해병 특검법
특검 규모	합계	267명 이내	205명 이내	105명 이내
	특별검사	1명	1명	1명
	특별검사보	6명	4명	4명
	파견검사	60명 이내	40명 이내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	80명 이내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80명 이내	40명 이내
수사 개시일		2025. 6. 18.	2025. 7. 2.	2025. 7. 2.
수사 기간 (준비 기간 제외 기준)	합계	150일 이내	150일 이내	120일 이내
	원칙	90일 이내	90일 이내	60일 이내
	연장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재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30일 (대통령 승인)	30일 (대통령 승인)

(김용민의원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在廷)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김용민의원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 특별검사는 현행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있고⁶⁾, 특별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⁷⁾).

현행법상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발췌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략)

라) 박◆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죄형법정주의, 유추·확장해석금지,

-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공소장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수사의 특례 신설 (김용민의원안 제9조의2 신설)

현 행	김용민의원안
<신 설>	제9조의2(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의 특례) ①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내에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제9조의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제9조에서 정하는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내에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9조제6항⁹⁾에도 불구하고

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사기간 등)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

특별검사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김용민의원안 제9조의2 신설).

- 상설특검법¹⁰⁾ 및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특별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5.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김용민의원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김용민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신설>	제9조의3(공소시효의 정지) 특별검사가 수사 중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4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두 건의 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중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김용민의원안 제9조의3 신설), 이성윤의원안은 현행법상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하고 있음(이성윤의원안 제24조 신설).
- 김용민의원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수사 중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자 하려는 취지이고,

이성윤의원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범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¹¹⁾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4년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범인**뿐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1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에너지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임 명 절 차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없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좌동)	(좌동)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민주통합당 의 특검후 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더불어민주 당·국민의 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 의 의원모 의 의원모 일이 대한 변협 추천 4인 중 특 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교섭 단체 합의로 법 원 행정 처 장 및 대 한변협 회 장이 각각 2인씩 추천 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 설단체가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일반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검사 법조경력 변호사 또는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 조 경 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 격 보유하고 공공기 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 상 재직	(좌동)	(좌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 내에 공무원 이었던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진적 있는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졌던 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 명전 1년 이내에 당적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권한	①수사협조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 응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작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작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60인 이내, 파견공무원 10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3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 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작동)	(작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 국회 보고)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유통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40일)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작동)	(작동)	(작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판 결확정시 10 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 회에 서면보 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 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피의자·의사 수사과정)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직무수행 방해: 5년이하 징역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옷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 득 정 보 소속관 보고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수사최장기간: 17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267인),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60인), 파견공무원(100인), 특별수사관(100인)